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소통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대책본부장 부재 시 직무대행 순서 명확화(안 제17조제3항)
- 나.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신설(안 제17조의2)
- 다. 통합지원본부의 피해자·가족 지원 및 소통 기능을 명시하고, 전담팀 및 통합 운영 근거 마련(안 제27조)
-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1)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2)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 3) 규제사전심사: 대상아님
 - 4) 위원회 관련 사전협의: 대상아님

라.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 : 대상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대비”라 함은”을 ““대비”란”으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를 “상황하에서 수행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복구”라 함은”을 ““복구”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마련하여야”를 “마련해야”로, “한다)생활”을 “한다) 생활”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확보하여야”를 “확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협력하여야”를 “협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응하여야”를 “응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하여야”를 “취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협력하여야”를 “협력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구의”를 “법 제11조에 따라 구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으로 구성한다”를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7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8.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관계 기관”을 “관계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개최한”을 “개최할”로, “작성·비치하여야”를 “작성·비치해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협조하여야”를 “협조해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점검하여야”를 “점검해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실무조정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위촉하는 사람”을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4호 중 “수행 한다”를 “수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통제관·담당관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서울특별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서울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조직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제27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⑥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서울시 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는 경우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제4호 중 “및 그 밖에 재난에 관한 주요사항”을 “등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제1항 본문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개최하여야”를 “개최해야”로 한다.

5.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제24조제2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근무하여야”를 “근무해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수행하여야”를 “수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을 “재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운영하여야”를 “설치·운영해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운영하여야”를 “운영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상황총괄”을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 상황총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통합지원본부장이 별도로”를 “규칙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소통

- ⑤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7조의2에 따라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제28조 중 “파견하여야”를 “파견해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설치·운영하고자 할”을 “설치·운영하려는”으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재배치하여야”를 “재배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정성별”을 “특정 성별”로,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법 제25조제2항”을 “법 제25조제3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관리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5조의2”를 “법 제25조의4”로, “취하여야”를 “취해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지하여야”를 “유지해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유사시설의 재난예방”을 “피해시설의 긴급한 안전점검이 필요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의 재난예방을 위하여 점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치하여야”를 “조치해야”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취득한”을 “취득할”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40조 중 “작성·운용하여야”를 “작성·운용해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력하여야”를 “협력해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구축하여야”를 “구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비하여야”를 “정비해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득한”을 “취득할”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축·운영함에 있어”를 “구축·운영하는 경우”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재난발생시”를 “재난발생 시”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응하여야”를 “응해야”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법 제60조제2항”을 “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하여야”를 각각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한다.

제55조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56조 중 “환수하여야”를 “환수해야”로 한다.

제57조 중 “확보하여야”를 “확보해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추진하여야”를 “추진해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61조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한다.

제66조 전단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예방”이라 함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 <u>이란</u> ----- ----- ----- ----- -----.
3. “대비”라 함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모든 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 <u>대비</u> ”란 ----- ----- <u>상황하에서 수행해야</u> ----- ----- ----- ----- -----.
4. “대응”이라 함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 <u>이란</u> ----- ----- ----- ----- ----- ----- -----.
5. “복구”라 함은 재난발생 이전	5. “ <u>복구</u> ”란 -----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
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
선대책 등을 포함한 모든 활
동을 말한다.

6.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
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
난관리책임기관 중 서울특별
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
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
관을 말한다.

7.·8. (생략)

제3조(구의 책무) ① 구는 재난이
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
고 재난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
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
리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
난 발생 후에는 서울특별시 노
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
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

6. -----이란 -----

-----.

7.·8. (현행과 같음)

제3조(구의 책무) ① -----

----- 마련해야 -----
----- 한다)
생활-----
----- 노력해야 -----.

② -----

----- 확보해야 -----

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구
민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구
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
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지도, 조
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
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
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재
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언
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
신체·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자신이 소유·점유하
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

③ -----

----- 협력해야 -----.

④ -----

----- 응해야 -----.

제5조(구민의 책무) ① -----

----- 노력해야 -----.

② -----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③ 구민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구가 수립·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신설>

3. ~ 5. (생략)

----- 취해야 -----.

1. ~ 5. (현행과 같음)

③ -----

----- 노력해야 -----.

④ -----
----- 협력해야 -----.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법 제11조에 따라 구의 -----

-----.

② -----.

1. · 2. (현행과 같음)

3.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후단 신설>

1. ~ 7. (생 략)

8.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소속기관 장은 조직 내 신분 변동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구성한다.

1. ~ 7. (현행과 같음)

8.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

----- 통보해야 ----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후단 신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제10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생략)

② 실무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의 처리

3. (생략)

③ ~ ⑥ (생략)

⑦ 실무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

-----.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 통지해야 -----.

----- 예외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관계 기관 -----

3.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 개최

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⑧ (생략)

제11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의뢰 받은 관계전문가나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관계기관·단체 등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장은 위원회 등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등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할 ----- 작성·비치해야 -----.

⑧ (현행과 같음)

제11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현행과 같음)

② -----

----- 범위
-----.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협조해야 -----.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

----- 통보해야 -----
--.

② -----

----- 점검
해야 -----.

제15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법 제12조의3제1항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한다.

② (생략)

③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 구성한다.

1. ~ 3. (생략)

④·⑤ (생략)

제17조(구성·운영) ① (생략)

② 대책본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차장,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1. ~ 3. (생략)

4. 실무반은 해당 재난과 관련

설치 및 기능) ① 위원회-----

② (현행과 같음)

③ -----

----- 위촉한다. -----

----- 않도록 -----

1. ~ 3.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17조(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

이 있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
과 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
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하며, 재
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를 위한 업무를 수행 한다

<신 설>

③ (생 략)

<신 설>

----- 수행한다

③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
통제관·담당관 순서로 그 직무
를 대행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7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
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제21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를 거쳐 대책본부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
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
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 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서울특별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서울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조직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제27조 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⑥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서울시 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는 경우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대책본부 회의 등)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 회의를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1. ~ 3. (생략)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 지원기준, 지원결정 및 그 밖에 재난에 관한 주요사항

<신설>

②·③ (생략)

제20조(회의 소집) ① 대책본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제21조(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제19조(대책본부 회의 등)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

-- 등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회의 소집) ① -----

-- 통보해야 ----.

----- 예

외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상황판단회의) ① -----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설>

5. (생략)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여야 하나, 필요에 따라 차장·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4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자는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기관에서 비상대기 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조(파견 근무자의 사전교육

-----.

1. ~ 4. (현행과 같음)

5.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

----- 개최해야 -----

-----.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통보해야 -----

-----.

③ -----

----- 근무해야 -----

-----.

-----.

제25조(파견 근무자의 사전교육

및 임무 등) ① (생략)

②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파견근무자 중 근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조치결과를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설치·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 발생 시, 법 제16조에 따른 대책본부의 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통합지원본

및 임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수
행해야 ----.

③ -----

----- 통보해야 -----.

제26조(설치·운영) ① -----
--- 재난 -----

-----.

② -----

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 8. (생략)

제27조(구성 및 임무)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들로 구성된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하여야 하며, 통합지원본부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 6. (생략)

<신설>

7. (생략)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 안에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을 위한 실무반을 둘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

--- 설치·운영해야 -----.

1. ~ 8. (현행과 같음)

제27조(구성 및 임무) ① -----

----- 운영해야 -----

-----.

② -----

-----.

1. ~ 6. (현행과 같음)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소통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③ -----

-----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 상황총괄-----
-----.

④ -----

임무수행 및 제3항에 따른 실무
반 편성·임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
여 통합지원본부장이 별도로 정
한다.

<신 설>

제28조(업무연락관 파견) 통합지
원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와 재
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
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
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원본부
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
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
하여야 한다.

제30조(설치·운영계획 통보)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
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고자

-- 규칙으로 -----
-----.

⑤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7조의
2에 따라 재난피해자지원센터
가 설치·운영되는 경우로서 재
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에 따
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재
난피해자지원센터와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제28조(업무연락관 파견) -----

----- 파견
해야 -----.

제30조(설치·운영계획 통보) ①

----- 설치·운영하려는 -

할 경우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고,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1조(복구체계의로의 전환)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구성·운영) ①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

----- 설치해야 -----

----- 통보해야 -----
--.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복구체계의로의 전환) ① --

----- 재배치해야 -----.

② -----

----- 보고해야 -----.

제34조(구성·운영) ① -----

당하는 민간 전문가 중에서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생략)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3. (생략)

② ~ ④ (생략)

⑤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생략)

제35조(재난예방조치)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특

정 성별-----

----- 않도록 -----

-----.

1. (현행과 같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없

으면 -----

-----.

⑥ (현행과 같음)

제35조(재난예방조치) ① 법 제25조제3항-----

----- 제출해야

-----.

②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통보한 서울특별시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과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재난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재난대비훈련)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②

위원회

③ -----

----- 통보해야 -----.

[illegible]

제36조(재난대비훈련) ① -----

하고,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매년 1회 이상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구청장은 사전교육 이수자 등의 유·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비상근무소집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제37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상황 발생 시 해당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유사시설의 재난 예방이 필요한 경우

2. (생략)

② (생략)

제38조(재난위험요인의 신고) ① 누구든지 일상생활에서 재난위

----- 실시
해야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유지해야 -----.

④·⑤ (현행과 같음)

제37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① ----

--.

1. -----
----- 피해시설의 긴급한 안전점검이 필요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의 재난예방을 위하여 점검---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재난위험요인의 신고) ① -----

협요인을 발견하거나 재난발생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
을 구청장, 긴급구조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관할 긴급구조
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
의 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
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
여야 한다.

제39조(위험정보 통보) 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
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
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
는 즉시 구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40조(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
성·운용 등) 법 제34조의5에
따라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적
용하고 시행하여야 할 조치사항
과 임무를 기술한 현장조치 행
동매뉴얼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 신고
해야 ----.

② -----

----- 조치해
야 ----.

제39조(위험정보 통보) -----
----- 재난관리책임기관

----- 취득할 ----

---- 통보해야 -----.

1. ~ 3. (현행과 같음)

제40조(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
성·운용 등) -----

----- 작성·운용해야 ----
----.

제41조(대피소의 관리 등) ① 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구청

장은 재난발생 시 관내 주민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
을 설치·정비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
대피소, 대피경로 등을 확인하
며,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
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42조(동원체계의 구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
른 인력·장비 등의 동원에 대
비하여 평상시에 동원체계를 구
축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을 작성하고 소관
업무와 관계되는 재난응급대책
을 수립·시행하고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비축하
여 영 제37조에 따른 재난방지
시설을 정비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43조(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① 법 제20조에 따라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 소관 업무 또는

제41조(대피소의 관리 등) ① 구

청장-----

-----.

② -----

--- 협력해야 -----.

제42조(동원체계의 구축 등) ① -

----- 구

축해야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정비해야 -----.

④ (현행과 같음)

제43조(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① -----

시설에서 재난발생이 예상될 경우 또는 재난발생 시 이를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고, 피해상황과 기관별·지역별 재난 대응상황을 파악하여 사전에 구축된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각종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등) ① (생략)

② 법 제38조의2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 및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③ 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체계를 구축·운영함에 있어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하 안전취약

----- 보고해
야 ----.

② -----

----- 해야 -----
--.

제45조(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취득할 -----

----- 통보해야 -----.

1. ~ 4. (현행과 같음)

③ -----
----- 구축·운영하는
경우 -----

계층”)을 고려해야 한다.

④ (생 략)

제46조(응급대응조치)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47조(복구활동 등) ① 구청장은 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역의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시설 응급복구 및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2항과 관련하여 긴급복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8조(재난지역 적용 범위) ① (생 략)

②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

-----.

④ (현행과 같음)

제46조(응급대응조치) ① -----

----- 재난발생 시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7조(복구활동 등) ① -----

----- 해야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응해야 -----.

제48조(재난지역 적용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 법 제60조제4항-----

역을 제외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0조(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및 생활안정지원 실시 등)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구청장이 제51조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부담기준 규정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③ · ④ (생략)

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_____.

제50조(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및 생활안정지원 실시 등) ① -

신고해야 ----.

② _____

신고해야 ----.

1. · 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 _____

----- 실

시해야 ----.

제55조(중복지원 금지) 피해주민
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
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
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
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
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
급하지 아니한다.

제56조(환수) 구청장은 생활안정 지원 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49조 및 제55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57조(재원의 확보) 구청장은 제 51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때에는 예비비 등을 활용하거나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9조(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구청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안전문화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55조(중복지원 금지) -----

---- 않는다.

제56조(환수) -----

----- 환수해야 -----.

제57조(재원의 확보) -----

----- 확보해야 -----.

제59조(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
책의 추진) ① -----

----- 추진해야 -----
-----.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안전문화활동의 육성·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구청장은 안전문화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1조(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구청장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2조(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구민, 재난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66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 및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제60조(안전문화활동의 육성·지원) ① -----

----- 노력해야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범위-----.

제61조(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

----- 노력해야 -----.

제62조(안전교육) ① -----

----- 실시해야 -----.

② (현행과 같음)

제66조(수당 등) -----

----- 범위-----
----- ≤후

<u>경우 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용한다.</u>	<u>단 삭제></u>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제1호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2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5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노원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별도 비용 및 예산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안전도시과 이재천
연 락 처	02-2116-3121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 (2026. 1. 21. 공포, 2026. 7. 22. 시행)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 등이 참여하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수습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과 파견 및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④ 중앙대책본부장(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지 아니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지원실시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을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지원실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